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938호   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5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안치영 의원 등 7인  |
| 발의연월일 | 2025년 4월 11일 |

#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안치영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38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안치영, 최정훈, 안지윤,  
김국기, 박재주, 오영탁,  
조성태

### 1. 제안이유

- 인용 조문 오기를 정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약칭 사용에 따른 문장부호 오기를 정정함(안 제6조)
  - －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 →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- 위원회 약칭 위치 변경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)
- 법률 조항의 띄어쓰기(안 제7조, 안 제12조)
  - － 제6조 제4항 → 제6조제4항
  - － 제11조 제1항 → 제11조제1항
- 인용조문 오기 정정(안 제27조, 안 제29조)
  - － 제25조 → 제23조
  - － 제1항 → 제2항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첨부제외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“범용(유니버설)디자인(이하 “범용디자인”이라 한다)””를  
““범용(유니버설)디자인”(이하 “범용디자인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”를 “「  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 
3항 중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  
공공디자인위원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시”를 “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”  
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공공디자인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  
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 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선출”을 “호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  
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 
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제4호 중 “제11조 제1항”을 “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선출”을 “호선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에 따른”을 “제2항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영 제11조”를 “시행령 제11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시범사업대상”을 “시범사업 대상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제25조”를 “제23조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2조 제13호”를 “제2조제13호”로 하고, 제7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」 제8조”를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9조”로,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」 제14조 내지 제21조”를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 
진흥 조례」로,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  
회”로 하고, 제11조 중 “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”로  
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“범용(유니버설)디자인(이하 “범용디자인”이라 한다)”</u>이란 국적, 성별, 나이,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, 건축, 환경,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<u>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</u>)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,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도 공공디자인의 종합적·체계적·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범용(유니버설)디자인”(이하 “범용디자인”이라 한다)</u>이란 국적, 성별, 나이,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, 건축, 환경,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<u>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</u>)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,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도 공공디자인의 종합적·체계적·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</p> |

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~ ⑤ (생략)

제7조(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) 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시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

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) ① 도지사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시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

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**

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.

**② (생략)**

**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**
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**③ (생략)**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(신설)

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**

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② (현행과 같음)**

**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**
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③ (현행과 같음)**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**

제12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 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 
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 
수 있다. 다만, 제6호의 경우에  
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.

1.~3. (생략)

4.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 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 
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 
한 경우

5.~6. (생략)

제15조(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① ~ ② (생략)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  
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 ~ ⑤ (생략)

제16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①

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표 1에  
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  
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 
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  
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  
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
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  
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 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 
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 
수 있다. 다만, 제6호의 경우에  
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.

1.~3. (현행과 같음)

4.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  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 
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 
한 경우

5.~6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  
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①

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표 1에  
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  
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 
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  
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  
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
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  
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~ 2. (생 략)

② (생 략)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기준  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 략)

**제21조(수당)** 위원회에 참석한  
위촉직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  
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  
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 
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 
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  
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 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4조(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 
등)**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 
같은 법 영 제11조에 따라 문화  
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 
공공디자인을 선정·시상하고  
이를 홍보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 략)

**제26조(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  
행)** ① ~ ② (생 략)

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 
의 시·군 또는 주민은 사업의  
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  
여야 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기준  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**제21조(수당)** 위원회에 참석한  
위촉직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  
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  
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 
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 
수 있다.

**제24조(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 
등)**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 
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 
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  
한 공공디자인을 선정·시상하  
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**제26조(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  
행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  
역의 시·군 또는 주민은 사업의  
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  
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27조(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·관리)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제25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2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~ 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·관리)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제23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취

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]

- 제6조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,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의 오기를 정정하고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